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4누630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[redacted]공사

피고, 항소인 1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수구청장

2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3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4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5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6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. 8. 14. 선고 2014구합30521 판결

변 론 종 결 2015. 4. 30.

판 결 선 고 2016. 1. 28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7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 대하여,

가.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7. 8. 한,

1) 재산세 2,841,937,980원의 부과처분 중 2,639,876,19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2) 재산세 93,124,220원의 부과처분 중 86,503,09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3) 재산세 37,774,360원의 부과처분 중 35,088,61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4) 재산세 2,037,140원의 부과처분 중 1,892,30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나.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7. 8. 한,

1) 재산세 33,976,690원의 부과처분 중 31,560,95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2) 재산세 13,221,660원의 부과처분 중 12,281,60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3) 재산세 2,818,830원의 부과처분 중 2,618,42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4) 재산세 1,298,950원의 부과처분 중 1,206,60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5) 재산세 632,710원의 부과처분 중 587,73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6) 재산세 554,050원의 부과처분 중 514,66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7) 재산세 482,810원의 부과처분 중 448,49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8) 재산세 419,590원의 부과처분 중 389,76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다.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7. 8. 한 재산세 668,020원의 부과처분 중 620,53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라.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7. 10. 한 재산세 499,150원의 부과처분 중 463,67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7

마.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7. 8. 한,

1) 재산세 428,670원의 부과처분 중 398,20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2) 재산세 234,120원의 부과처분 중 217,48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바.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7. 8. 한,

1) 재산세 1,144,080원의 부과처분 중 1,062,740원을 초과하는 부분,

2) 재산세 899,120원의 부과처분 중 835,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

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,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<고치는 부분>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"마련함으로서"를 "마련함으로써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의 "금액으로"를 "금액을 감면한 금액으로"로 고친다.

<추가하는 부분>

○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【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7

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,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(2014. 3. 24.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.】

○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【■ 구 지방공기업법(2014. 3. 24.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3장 지방공사

제4장 지방공단

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

제77조의3(설립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6. 4.>】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형식

판사 강경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7

판사 남양우